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정지원 의원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

발 의 자 : 정지원 의원(1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
 김춘남·소진혁 의원(6인)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조제4호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부서검토: 기술개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재배·종자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전문 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현황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종자,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판매의 문제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과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품종·종자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종묘 지원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구미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 17.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생략)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 8.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기술개발과

조 례 명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 「농촌진흥법」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실태조사 및 사업(안 제5조~제6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안 제7조~제8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재배 환경,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의 제도적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 강화 및 생산성·소득 안정화▪ 지역 특화 작목 및 신소득 작목 개발○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제1항제2호 :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재배 기술 개선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작목 보급 및 신기술 확산 과정에서 보급사업비, 연구개발비, 현장 컨설팅비 등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인정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향후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기술적인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특화농업팀 윤나겸(☎480-4273)